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2011두16735]



【판시사항】

-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공2006하, 1171) /
-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29) /
-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공2008상, 5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누38259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 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 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소외 1, 2, 3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